

〔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7월 5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7월 5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7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1호

2.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자동차세 연납자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2회, 재산세2회, 주민세) 납기내 납부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

나. 대상자 선정(안 제4조)

-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는

인원 등을 감안하여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법인 1,000만원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함

다. 지원범위(안 제5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1년 후 시행(안 부칙)

4. 검토보고 요지

- 동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반복되는 납세고지로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율저하 및 소액체납자 증가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03. 7월부터 연 5회 성실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내 납세자에게 전자추첨을 통한 경품(10,000원권, 거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오던 중 거창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의 규정에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에 의해 '05년 7월부터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중단 하였으나,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각호의 규정(선거일전 1년 또는 선거일전 60일)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종전의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경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동조례가 시행되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진 납세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경남에는 양산시,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등에서 제정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함.

○ 그러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1) 부칙에서 제5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사유
- 2) 제3조(지원대상)에서 대상인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5조(지원범위 등)에서 경품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구체적 세부추진 계획은?
- 3) 동제정조례와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및 「거창군 포상 조례」의 차별성이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